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죄 등 관련 압수·수색 시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책임자 등의 승낙 불요 도입 등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89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3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4  |
| 1. 내란·외환죄 등 관련 압수·수색 시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책임자<br>등의 승낙 불요 도입(2개 안 제110조 및 제111조) ..... | 4  |
| 2. 체포·구속영장 집행의 거부·방해·기피 금지 명시<br>(백혜련의원안 제200조의2 및 제209조) .....                   | 11 |

## I. 제안경위

### 1. 백혜련의원안

가.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 2. 박수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5. 9.

다. 회 부 일 : 2025. 5.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백혜련의원안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영장 집행기관 또는 집행관이 출입을 방해받아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0조제2항 등).

## 2. 박수현의원안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르게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 Ⅲ. 검토의견

#### 1. 내란·외환죄 등 관련 압수·수색 시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책임자 등의 승낙 불요 도입(2개 안 제110조 및 제111조)

두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에 관한 죄 및 외환에 관한 죄 등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그 담당 기관 등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박수현의원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도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신·구조문대비표 ]

| 현행                                                                                                                          | 백혜련의원안                                                                      | 박수현의원안                                                                                                                              |
|-----------------------------------------------------------------------------------------------------------------------------|-----------------------------------------------------------------------------|-------------------------------------------------------------------------------------------------------------------------------------|
| 第110條(軍事上 秘密과<br>押收) ① 軍事上 秘密<br>을 要하는 場所는 그<br>責任者의 承諾없이<br>押收 또는 搜索할 수<br>없다.<br>②前項의 責任者는 國<br>家の 重大한 利益을<br>害하는 境遇를 除外하 | 第110條(軍事上 秘密과<br>押收) ① (현행과 같<br>음)<br><br>② -----<br>-----<br>--경우(압수 또는 수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br>압수) 군사상 비밀을<br>요하는 장소에 대한<br>압수 또는 수색에 대<br>해서는 그 책임자의<br>승낙을 요하나, 이 경<br>우 국가의 중대한 이<br>익을 해하는 경우를<br>제외하고는 이를 승낙 |

| 현행                                                                                                                                 | 백혜련의원안                                                                                                                  | 박수현의원안                                                                                                                                                                                                                                          |
|------------------------------------------------------------------------------------------------------------------------------------|-------------------------------------------------------------------------------------------------------------------------|-------------------------------------------------------------------------------------------------------------------------------------------------------------------------------------------------------------------------------------------------|
| <p><u>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u></p>                                                                                                     | <p><u>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균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br/>-----.</p> | <p><u>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u></p> <p>1. 그 책임자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외환의 죄) 또는 「균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p> <p>2. <u>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u></p> |
| <p><u>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該當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u></p> | <p><u>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 ① (현행과 같음)</u></p>                                                                              | <p><u>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의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소 또는</u></p>                                                                                                             |

| 현행                                                                                                                     | 백혜련의원안                                                                                                                                                     | 박수현의원안                                                                                                                                                                                                                                                                                                                            |
|------------------------------------------------------------------------------------------------------------------------|------------------------------------------------------------------------------------------------------------------------------------------------------------|-----------------------------------------------------------------------------------------------------------------------------------------------------------------------------------------------------------------------------------------------------------------------------------------------------------------------------------|
| <p><u>의承諾없이</u>는 <u>押收</u>하지 못한다.</p> <p>②<u>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u>하고는 <u>承諾을 拒否</u>하지 못한다.</p> | <p>② -----<br/>-----<br/>-----<br/>-----<u>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 <p><u>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나, 이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u></p> <p>1. <u>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혐의로 압수 또는 수색과 관련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피고인인 경우</u></p> <p>2. <u>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u></p> |

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현행 제110조<sup>1)</sup>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111조<sup>2)</sup>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이나 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책임자나 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거부 사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됨.

이들 규정은 현행법 제219조<sup>3)</sup>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며,<sup>4)</sup> 이 중 제110조는 제145조<sup>5)</sup>에 따라 검증에 관하여도 준용됨.

현행 규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의 책임자 또는 담당·감독기관에게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거부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진실 발견이라는 이익을 보호하

---

1)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또한, 현행법 제184조제2항에 따르면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으므로, 판사가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 제110조·제111조가 적용됨.

5) 「형사소송법」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기 위해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 거부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임.<sup>6)</sup>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과정 시 경찰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음.<sup>7)</sup> 이는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한 수사과 재판과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국가존립을 위한 형벌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위 규정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졌음.

이에 두 개정안은 압수·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sup>8)</sup>상 반란죄 및 「형법」<sup>9)</sup>상 내란죄·외환죄일 경우 등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시 책임자나 담당 기관 등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려는 것임.

두 개정안은 반란죄나 내란·외환죄와 같이 ‘국가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국가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오히려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봄.

---

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Ⅰ)」, 제5판, p591, p593

7) 연합뉴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불허에 진입 실패”, 2024. 12. 11.

8) 「군형법」상 관련 조문은 [참고] 자료 참조

9) 「형법」상 관련 조문은 [참고] 자료 참조

다만, 반란죄나 내란·외환죄의 경우라도 해당 범죄혐의와 무관한 군사상·공무상 비밀까지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범죄와 달리 이들 범죄에 대해서만 군사상·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반면,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은 국가존립과 헌법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서 헌법상으로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sup>10)</sup>가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보호의 예외를 규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한편, 박수현의원안이 반란죄나 내란·외환죄인 경우 외에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도 책임자 등 승낙 요건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삼권분립’ 등 측면에서 ‘수사’라는 행정부 고유권한·기능에 입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sup>11)</sup>

참고로, 두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sup>12)</sup>

---

10)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12) 추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2206807호), 박상혁의원안(의안번호 제2207046호), 정일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07350호), 주철현의원안(의안번호 제2207457호),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07481호), 박범계의원안(의안번호 제2209804호), 윤건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10011호), 이광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11182호)

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sup>13)</sup>이 발의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두 개정안에 따라 반란죄 및 내란·외환죄 등에 있어 군사상·공무상 비밀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내란죄 및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 「군형법」<sup>14)</sup>상 ‘이적(利敵)의 죄’ 등 추가 여부를 포함하여, 어떤 범죄를 군사상·공무상 비밀보호의 예외 인정 대상범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

13) 한병도의원안(의안번호 제2207196호)

14) 「군형법」상 관련 조문은 [참고] 자료 참조

## 2. 체포·구속영장 집행의 거부·방해·기피 금지 명시

### (백혜련의원안 제200조의2 및 제209조)

백혜련의원안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sup>15)</sup>에 따라 지정된 경호구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백혜련의원안                                                                                                                                                           |
|----------------------------------------------------|------------------------------------------------------------------------------------------------------------------------------------------------------------------|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⑤ (생략)<br><u>&lt;신설&gt;</u>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⑤ (현행과 같음)<br><u>⑥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경호구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같다.</u> |
|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     | 제209조(준용규정) -----<br>-----                                                                                                                                       |

- 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 3. 23.>

|                                                                                                                                         |                                                                                           |
|-----------------------------------------------------------------------------------------------------------------------------------------|-------------------------------------------------------------------------------------------|
| 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 -----<br>-----<br>-----<br>---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00조의2제6항-----<br>-----<br>-----. |
|-----------------------------------------------------------------------------------------------------------------------------------------|-------------------------------------------------------------------------------------------|

현행 제200조의2<sup>16)</sup>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제201조<sup>17)</sup>에 따르면,

1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7)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음.<sup>18)</sup> 이는 피의자가 대통령 등인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경호 필요성만을 이유로 그 집행을 전면 거부할 수 있게 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수사과 재판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졌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호구역이라도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번 사례처럼 적법한 영장에 대하여 집행 장소가 대통령 업무공간이나 관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문제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여 실체적

---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8) 조선일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2025. 1. 3.

진실 발견 및 정당한 국가 형벌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행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음은 개정안과 같은 명문규정이 아니더라도 영장제도 취지상 이미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정안대로 입법하더라도 ‘대통령 경호’ 등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
| 문 의 처        |
| 02)6788-5048 |

## 형 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군 형 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